

임대보증금보증(일괄)

보증서번호 제 호 일괄신청번호 2026-015399

보증금액 합계	일금	일백오십억칠천칠백만원정 ₩ 15,077,000,000—		
보증세대(호실)수		221		
보 증 기 간		* 세부내역참조		
사 업 명		독산동 역세권 청년주택		
보 증 채 권 자		임 차 인		
주 채 무 자	상호	(주) 성원산업	대표자	정성훈
특 기 사 항	1. "공사는 정부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상 등 · 호수별로 구분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" 2. 임대차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계좌 : 3. "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상단에 기재된 보증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위한 보증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소멸하므로 매년 보증료 납부 등의 경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" 4. 보증발급 시 설정된 지당권(구임대주택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기금 융자금) 이외의 지당권 설정 및 권리제한 사항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, 입주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,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등 모두 갖추는 때(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)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5. 이 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. 조건 미이행 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증 효력을 상실합니다. 1. 각 세대별로 주택가격 대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의 비율(부채비율)이 100분의 90 이내일 것 2. 각 세대별로 주택가격 대비 담보권 설정금액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			

2026 년 06 월 17 일

주택도시보증공사

사장 최인호

대리인 경기북부지사장

전인석

담 당 자 : 정해승

전화번호 : 0318943217

※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Korea Housing & Urban Guarantee Corporation

사 본

사 본

※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(인터넷보증)의 "보증서발급조회"를 통해 보증서 발급사실을 조회,확인 할수 있습니다.